

‘마포농수산물시장 쇼핑카트’ 구매 계약 특수계약조건

마포농수산물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갑’)이 쇼핑편의용 ‘쇼핑카트’(‘카트’)를 업자(‘을’)와 구매계약함에 있어 정하는 특수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조건 적용)이 조건은 ‘갑’이 관리 운영 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쇼핑카트 계약 구매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의 연장)계약기간 만료 후 ‘갑’의 요구에 ‘을’이 응할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단, 수량은 ‘갑’이 정하는 것으로 함)으로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쇼핑카트’의 규격·사양)별첨 규격·사양서와 같다.

제4조(실제 구매수량과 인쇄사양의 수정)실제 구매 수량은 ‘갑’의 소요량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고, ‘갑’의 주차장 운영 방법의 변경에 따라 도중에 ‘쇼핑카트’의 주문 사양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이 경우 단가의 변동은 없다)

제5조(납품)① ‘을’은 ‘갑’의 납품지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갑’이 정한다.

② ‘을’이 납품할 때에는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검수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을’이 납품기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률(1일 1.5/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납품대금 지급 시 상계 가능)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갑’의 사정에 의하여 ‘갑’이 납품연기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대금지불)납품 후 ‘을’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갑’은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제8조(하도급 등의 금지)‘을’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및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을’이 납품 지연과 거부, 품질, 규격 상이, 불량품 납품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중도해지 등)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갑’은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납품의 지연과 거부, 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성실하여 계약의 이행 차질, 또는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 등의 처분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로 부도, 채권압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부실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미 납품된 것을 ‘갑’이 반품 요구하면 ‘을’은 1개월 이내에 재고 물품을 회수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①계약서, 또는 이 특수계약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규정 및 내규에 의한다. 단,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유관 상관례에 따른다.

②계약 관련 소송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하는 때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수 있다. 끝.

마포농수산물시장 쇼핑카트 규격·사양서

1. 품명 : 쇼핑카트
2. 제품의 형태 및 규격(쇼핑카트 제원)

구분	101L
전장-바스켓	910mm-915mm
전장-하부	925mm-935mm
폭-바퀴	600mm
폭-손잡이	575mm
높이-전면	772mm
높이-후면	947mm
높이-전면바스켓	260mm
바퀴지름	100mm
바스켓용량(L)	102
무게(KG)	20

3. 핸들로그인쇄 쇼핑카트 손잡이에 당사 로고와 상호와 주의사항 문구를 인쇄



4. 보호 플라스틱 및 손잡이 캡 바스켓 코너 및 유아받침, 손잡이 캡의 플라스틱 사출은 적색으로 한다
5. 코인락 현재의 쇼핑카트와의 호환을 위하여 코인락은 500원짜리 투입구와 아래사진과 같이 통일 (코인락은 낙찰 후 별도 협의 후 제작 납품하도록 한다)



6. 제품의 검수 낙찰 업체는 낙찰 후 3일 이내에 규격서 대로 생산된 견본품(1-10대)에 대하여 승인 후 납품토록 한다